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



을 위해 가능하다면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상당 기간을 일을 하신 후에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달 셋째주 화요일 미주북음방송 이민법 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지간신경종(Neuroma)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가 찌릿찌릿 저리고 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발가락을 부딪히거나 찰지도 않았고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가요?”

대개 발가락 부분의 통증과 이상감각으로 내원한 환자들은 주로 Tingling 또는 Numbness sensation 즉, 찌릿하고 저린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는 주로 중년의 여성이나 당뇨병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지간신경종(Neuroma)이라는 병증 때문이다. 지간신경종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pinched Nerve 즉 압축 신경, 눌린 신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간신경종은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정확히 짚어 설명하지 못하고 앞발 부분 또는 발바닥 부분이 저리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정확히 자각하기 힘든 질환이기도 하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중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발병하는데 이는 그 부위 좁은 통로에 주요한 신경들이 지나면서 소위 “신경의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병목현상 때문에 그 부위의 신경이 압력을 받거나 염증이 생겨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이 아닌 다른 발가락 사이에 같은 지간신경종이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도 또 다른 병증을 의심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지간신경종이 의심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료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주로 의사의 촉진과 문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확진이 필요할 때는 즉석에서 간단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거나 MRI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개는 환자의 발가락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커진 신경종이 발견되지만 일반 크기의 신경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는 비교적 간단한 처방으로 시작된다. 우선 신발 앞쪽의 폭이 좁은 신발과 하이힐의 착용

을 지양하며 올바른 신발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하고 추천하게 된다. 그리고 발의 앞꿈치 밑부분에 패드를 대준다. 이를 Metatarsal Pad라고 부르는데 걸을 때 디딤발 밑의 앞꿈치 바로 뒷부분을 지지하여 발가락 사이가 좁혀지지 않고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패드는 흔히 약국 등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패드와 함께 Foot Orthotics(의학용 교정 깔창)을 동시에 처방하기도 하는데 Metatarsal pads를 의학용 교정 깔창의 정확한 부분에 영구적으로 넣는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패드의 부착으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신경종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 소염제를 처방하거나 신경종에 직접 소염제를 주사한다. 먹는 약과 주사를 피하고 싶은 환자들이 많아서 ESWT(체외충격파)를 시행하기도 한다.

위의 치료법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수술을 하기도 한다. 비정상적으로 커진 신경종 부위를 절단하고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인데, 간혹 수술 후에도 불편한 감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어 요즘에는 수술 마지막 단계에 절단한 부분 신경의 말초 부위를 발 밑 근육조직에 심어 이들 신경말초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여 수술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도 한다.

지난 몇 차례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최고의 예방은 올바른 신발의 착용과 선택이다. 하이힐을 신을 때는 가능하면 신발 앞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앞이 뾰족하지 않은 구두를 선택하며 너무 조이는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장원호 발전문병원
Ryan Chang, DPM
(949) 484-4405
62 Corporate Park #235
Irvine, CA 92606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크라운
(PFM)
\$65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800부터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